

관세율표 및 상품학

【문제 1】 가정에서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제25류의 토석류(土石類)로 만든 꽃병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. (30점)

물음 1) 위 물품과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25류 주(Notes) 제1호를 기술하십시오. (10점)

물음 2) 위 물품과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68류 주(Notes) 제1호 및 제69류 주(Notes) 제1호를 기술하십시오. (16점)

물음 3) 위 물품이 분류가능 한 관세율표상(제68류 및 제69류로 한정) 호(Heading)와 호의 용어를 기술하십시오. (4점)

【문제 2】 관세율표의 특정물품에 대해 규정한 국내주 규정의 일부이다.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 (20점)

온자빌리(Onzabili) · 오레이(Orey) · 오방콜(Ovengkol) · 오지고(Ozigo) · 파다우크(Padauk) · 팔다오(Paldao) · 파리산드레드과테말라(Palissandre de Guatemala) · 파리산드레드파라(Palissandre de Para) · 파리산드레드리오(Palissandre de Rio) · 파리산드레드로세(Palissandre de Rose) · 파우아말레로(Pau Amarelo) · 파우말핍(Pau Marfim) · 풀라이(Pulai) · 푸나(Punah) · 콰루바(Quaruba) · 라민(Ramin) · 사펠리(Sapelli) · 사퀴-사퀴(Saqui-Saqui) · 세페티르(Sepetir) · 시포(Sipo) · 수쿠피라(Sucupira) · 수렌(Suren) · 타우아리(Tauari) · 티크(Teak) · 티아마(Tiama) · 토라(Tola) · 비롤라(Virola) · 화이트라왕(White Lauan) · 화이트메란티(White Meranti) · 화이트세라야(White Seraya)

물음 1) 위와 같이 「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개정의정서」(이하 ‘HS협약’이라 함)의 부속서인 품목분류표에는 없지만, 국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국내주가 규정된 관세율표상 류(Chapter) 5개를 쓰시오. (5점)

물음 2) HS협약 체약당사국의 의무 및 국내주 규정 설정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 (15점)

- (1) HS협약 제3조 제1항 가호 및 나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약당사국의 의무 사항을 기술하시오.
- (2) HS협약 제3조 제3항의 규정을 기술하시오.

【문제 3】 재포장없이 세트로 소매포장된 다음 3가지 물품에 대하여 답하시오. (30점)

물품 ①

- 주원료: 감광성 플라스틱 수지(resin), 안료, 광 개시제, 용제 등이 철판 용기에 포장(내용량: 300g)
- 경화제(hardener): 아크릴에스테르모노머, 에폭시 수지(resin), 용제 등이 철판 용기에 포장(내용량: 300g)

※ 용도: 반도체 재료를 포토리소그래피(photolithography) 기술로 제조하는데 사용

물품 ②

- 편물제 남성용 바지, 편물제 머플러, 직물제 남성용 셔츠, 직물제 싱글리츠(singlet)가 세트로 포장

물품 ③

- 비금속(卑金屬)제 손톱 깎는 기구, 비금속(卑金屬)제 손톱 클리너, 비(非)금속(non-metallic)제 손톱 광택기가 플라스틱 케이스에 함께 포장

물음 1) 물품 ①을 품목분류할 경우 주원료와 경화제(hardener)를 사용 전에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, 관세율표상 류(Chapter)를 쓰고 그 분류이유와 관련 규정을 기술하시오. (7점)

물음 2) 물품 ①을 품목분류할 경우 주원료와 경화제(hardener)를 사용 전에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, 관세율표상 류(Chapter)를 쓰고 그 분류이유와 관련 규정을 기술하시오. (8점)

물음 3) 물품 ②를 품목분류할 경우 그 근거 규정인 관세율표 제11부 주(Notes) 제 14호, 제61류 주(Notes) 제9호의 내용과 관세율표상 호(Heading)를 기술하시오. (10점)

물음 4) 물품 ③을 품목분류할 경우 관세율표상 호(Heading)를 쓰고 그 분류이유와 관련 규정을 기술하시오. (5점)

【문제 4】 무기류가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19부(제93류)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 (20점)

물음 1) 관세율표 제93류의 분류체계[관세율표상 호(Heading)와 호의 용어] 및 제93류 주(Notes) 제2호를 기술하시오. (10점)

물음 2) 다음 물품이 분류되는 관세율표상 류(Chapter)를 쓰시오. (10점)

- ① 신호용 조명탄
- ② 스포츠용 산탄총
- ③ 군사용 드론(무인기)
- ④ 군함
- ⑤ 자주식 장갑차량
- ⑥ 단독으로 제시된 무기용 망원조준기
- ⑦ 지상비행 훈련장치(모의 공중전 장치)
- ⑧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검(swords)
- ⑨ 어뢰·지뢰
- ⑩ 낙하산